

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교사의 기준면적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
(단위: m²)

학교	학생수별 기준면적	
	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	120명 이하 3.5×총학생정원
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	60명 이하 7×총학생정원	61명 이상 210+3.5×총학생정원
	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	60명 이하 7×총학생정원

비고

1.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.
2.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.